

#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1132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김성찬 · 김재원  
이정현 · 함진규 · 강효상  
김명연 · 윤한홍 · 성일종  
박순자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17조제1항에 “「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”로 규정되어 있으나, 「전자거래기본법」은 2012년에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으로 개정되었음.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  
따라서 “「전자거래기본법」”을 “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”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17조제1항).

##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「전자거래기본법」”을 “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